|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관리개선 사항 관련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64호  이전가격 사전합의 관리를 진일보 개선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 협정, 협약 또는 합의(이하 '조세협정'으로 약칭)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으로 약칭)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조세징수관리법'으로 약칭)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은 세무기관과 향후 연도에 발생하게 될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이전가격 결정원칙과 계산방법에 관한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타결할 수 있다.  2.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협상•체결 및 집행은 예비회담, 협상•체결 의향서, 분석•평가, 정식 신청, 협상•체결 및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여섯 단계를 거친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일방적, 양자간 및 다자간 세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3.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관할 세무기관이 기업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서 제출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세무사항 통보서>가 기업에게 송달된 납세연도 부터 시작해서 3~5개 연도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적용된다.  이전 연도에 발생한 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이전가격 사전합의 적용 연도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기업의 신청 절차를 거쳐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의해 확정된 가격 결정원칙과 계산방법을 이전 연도의 해당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소급 가능한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은 이전가격 사전합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도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세무기관의 특별세무조사, 특별납세조정 및 모니터링•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는 일반적으로 관할 세무기관이 기업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서 제출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세무사항 통보서>가 기업에게 송달된 납세연도 전 3개 연도의 매년 특수관계자간 거래 금액이 인민폐 4,000만위안 이상인 기업에게 적용된다.  5.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이 있는 기업은 서면으로 세무기관에 예비회담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기업과 예비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기업은 서면으로 관할 세무기관에 예비회담을 신청하고 <이전가격 사전합의 예비회담 신청서>(첨부 1)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기관은 기업과의 예비회담을 조직 및 전개한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기업은 국가세총국과 관할 세무기관에 동시에 서면으로 예비회담을 신청하고 <이전가격 사전합의 예비회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통일적으로 기업과의 예비회담을 조직 및 전개한다.  (2) 예비회담 기간에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간단하고 요약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① 이전가격 사전합의 적용 연도;  ②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  ③ 기업 및 그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그룹의 조직구조와 관리구조;  ④ 기업의 최근 3~5개 연도의 생산경영 상황, 동기자료 등;  ⑤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각 특수관계자의 기능과 리스크에 대한 설명(기능•리스크 구분 시 근거한 기구, 인력, 비용, 자산 등);  ⑥ 산업 발전추세와 경쟁환경 등을 포함한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  ⑦ 원가 절감, 마켓 피리미엄 등 지역적 특수 우위 존재 여부;  ⑧ 이전 연도로 이전가격 사전합의 소급적용 여부;  ⑨ 설명이 필요한 기타 상황.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기업은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① 조세협정 체약 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한 상황;  ②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특수관계자의 최근 3~5개 연도의 생산경영 상황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 상황;  ③ 국제이중과세 관련 여부 및 그에 대한 설명.  (3) 예비회담 기간에 기업은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충하여야 한다.  6. 세무기관과 기업이 예비회담 기간에 의견 일치를 본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기업에게 그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서 제출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세무사항 통보서>를 송달한다. 기업은 <세무사항 통보서>를 송달받은 후 세무기관에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서를 제출한다.  (1)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기업은 관할 세무기관에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 신청서 초안이 첨부된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서>(첨부 2)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기업은 국가세무총국과 관할 세무기관에 동시에 이전가격 사전합의 신청서 초안이 첨부된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 신청서 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이전가격 사전합의 적용 연도;  ②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  ③ 기업 및 그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그룹의 조직구조와 관리구조;  ④ 기업의 최근 3~5개 연도의 생산경영 상황, 재무회계보고서, 감사보고서, 동기자료 등;  ⑤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각 특수관계자의 기능과 리스크에 대한 설명(기능•리스크 구분 시 근거한 기구, 인력, 비용, 자산 등);  ⑥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사용하고자 하는 가격 결정원칙과 계산방법 및 그 가격 결정원칙과 계산방법을 지지하는 기능•리스크 분석, 비교 가능성 분석, 가정적 조건 등;  ⑦ 가치사슬 또는 공급사슬에 대한 분석과 원가 절감, 마켓 프리미엄 등 지역적 특수 우위 존재 여부에 대한 설명;  ⑧ 산업 발전추세와 경쟁환경 등을 포함한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  ⑨ 이전가격 사전합의 적용 기간의 연간 경영규모, 경제성에 대한 예측 및 경영계획 등;  ⑩ 이전 연도로 이전가격 사전합의 소급적용 여부;  ⑪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산업 관계 법률•법규;  ⑫ 기업에 본 조 제(3)항에 열거된 상황 부존재를 확약하는 내용;  ⑬ 설명이 필요한 기타 상황.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 신청서 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세협정 체약 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한 상황;  ②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특수관계자의 최근 3~5개 연도의 생산경영 상황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 상황;  ③ 국제이중과세 관련 여부 및 그에 대한 설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을 거절할 수 있다.  ① 세무기관이 기업에 대한 특별납세조정 입건 조사 또는 기타 조세 관련 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해당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②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간 특수관계자간 업무 왕래 보고표를 작성하지 아지한 경우;  ③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기자료를 준비, 보관 및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④ 예비회담 단계에서 세무기관과 기업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  7. 기업이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서를 제출한 후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사전합의 신청서 초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이 정상거래 원칙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분석•평가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에게 관련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각도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능 및 리스크 상황. 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가 납품, 생산, 운송, 판매 등 각 단계와 무형자산 연구, 개발 등에 있어서의 기여도, 발휘하는 기능 및 재고, 신용대출, 외환, 시장 등 면에서 부담하는 리스크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2) 비교 가능 거래 정보. 기업이 제출한 비교 가능 거래 정보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실질적 차이를 조정한다.  (3) 특수관계자간 거래 데이터.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수입, 원가, 비용 및 이윤 독립채산 여부 또는 합리적 비율에 따른 할당 여부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4) 가격 결정원칙과 계산방법. 기업이 이전가격 사전합의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가격 결정원칙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이전 연도로의 소급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5) 가치사슬 및 기여도 분석. 기업의 가치사슬 또는 공급사슬 분석이 온전하고 명확한지 여부, 원가 절감 및 마켓 프리미엄 등 지역적 특수 우위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여부, 가치 창조에 있어서의 현지 기업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6) 거래가격 또는 이윤 수준. 상기 분석•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독립거래 원칙에 부합되는 가격 또는 이윤 수준을 확정한다.  (7) 가정적 조건. 산업의 이윤 수준과 기업의 생산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영향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적용하는 가정적 조건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8. 분석•평가 단계에서 세무기관은 기업과 이전가격 사전합의 신청서 초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기능 및 리스크에 관한 현장 방문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이전가격 사전합의 신청서 초안이 독립거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기업은 세무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조정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사전합의 신청서 초안이 독립거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기업에게 그의 정식 신청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세무사항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기업은 통보를 접한 후 이전가격 사전합의 정식 신청 보고서가 첨부된 <이전가격 사전합의 정식 신청서>(첨부 3)를 세무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1)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기업은 관할 세무기관에 상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기업은 국가세무총국 및 관할 세무기관에 동시에 상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납세조정 상호협상 절차 개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정식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① 이전가격 사전합의 신청서 초안에서 채택한 가격 결정원칙과 계산방법이 불합리적이고 기업이 협상을 통한 조정을 거절하는 경우;  ② 기업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세무기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 보정 또는 정정이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③ 세무기관이 실시하는 기능 및 리스크에 관한 현장 방문 인터뷰에 기업이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을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기타의 경우.  9. 세무기관은 분석•평가를 토대로 협상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근거로 협상 업무를 전개하여야 한다.  (1) 관할 세무기관과 기업이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경우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첨부 4 참조)을 작성한다.  국가세무총국과 조세협정 체약 상대국의 세무당국이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경우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을 작성한다.  (2)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① 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의 명칭, 주소 등 기본정보;  ②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특수관계자간 거래 및 적용 연도;  ③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채택된 가격 결정원칙과 계산방법 및 비교 가능 가격 또는 비교 가능 이윤 수준 등;  ④ 이전가격 결정방법 응용 및 계산 기준 관련 용어의 정의;  ⑤ 가정적 조건 및 가정적 조건 변동에 대한 통보 의무;  ⑥ 기업의 연도보고 의무;  ⑦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효력;  ⑧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갱신;  ⑨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효력발생, 수정 및 종료;  ⑩ 분쟁의 해결;  ⑪ 문서•자료 등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⑫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관한 정보 교환;  ⑬ 부칙.  (3) 관할 세무기관과 기업이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을 타결한 후 양 당사자의 법정대표인 또는 법정대표인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체결한다.  국가세무총국과 조세협정 체약 상대국의 세무당국이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을 타결한 후 양 당사자 또는 각 당사자의 세무당국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가전합의를 체결한다. 국가세무총국은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관할 세무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기관은 기업에게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첨부된 <세무사항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집행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4)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따라 적용 연도 또는 소급 연도의 세금 추징(환급)이 필요한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연도별로 세금 추징액수 또는 환급액수를 계산하여 기업에게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따른 세금 추징(환급) 통보서>(첨부 5)를 송달하여야 한다.  10.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기간에 기업은 장부와 관련 기록을 포함한 이전가격 사전합의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온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소각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업은 납세연도가 종료된 후 6개월 내에 종이문서 및 전자문서 형식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 상황 연도보고서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기관은 연도보고서 전자문서를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경우 기업은 관할 세무기관에 종이문서 및 전자문서 형식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 상황 연도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연도보고서 전자문서를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도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내의 기업 경영상황 및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수정, 종료가 필요하거나 미결사항이 있거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기간에 관할 세무기관은 매년마다 기업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이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조항 및 요구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연도보고서에 기업의 실제 경영상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기재된 가정적 조건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등.  (3)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기간에 기업에게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관할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변화가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非) 주관적인 사유로 기한 내에 보고할 수 없게 된 경우 보고 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최장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세무기관은 기업의 서면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분석하고 실질적 변화가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수정하거나 종료한다. 체결한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세무기관과 기업은 이 공고에 규정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다시 체결할 수 있다.  (4)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이 공동으로 기업과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집행기간에 기업은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에 각각 연도보고서 및 실질적 변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기업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 상황에 대하여 연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기업이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집행기간이 만료되기 전 90일 내에 세무기관에 <이전가격 사전합의 갱신 신청서>(첨부 6)를 제출하여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현행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 상황 보고서와 현행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기재된 사실과 경영환경에 실질적 변화 발생 여부에 관한 설명자료 및 이전가격 사전합의 갱신 연도에 대한 예측 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이전가격 사전합의에서 4분위법을 채택하여 가격 또는 이윤 수준을 확정하였고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기간에 기업의 해당 연도 실제 경영실적이 4분위법 구간을 벗어난 경우 세무기관은 실제 경영실적을 4분위법 중간치로 조정할 수 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기업의 각 연도 경영실적의 가중평균치가 구간의 중간치에 미치지 못하였고 중간치로 조정이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갱신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기간에 상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적시에 상급 세무기관을 거쳐 관련 상황을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기간에 관할 세무기관과 기업 사이에 견해차가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직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조율할 수 있으며;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경우 반드시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조율하여야 한다. 직하급 세무기관은 직상급 세무기관 또는 국가세무총국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기업이 여전히 수락할 수 없는 경우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14.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세무기관과 기업은 이전가격 사전합의 절차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자가 고의로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조작된 자료, 불온전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기업에게 기타 비협조적인 상황이 존재함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합의 타결이 어렵게 되 경우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사전합의 절차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경우 조세협정 각 체약 당사국 세무당국의 협상을 거쳐 이전가격 사전합의 절차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이전가격 사전합의 절차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기업에게 <세무사항 통보서>를 송달하여 그 원인을 설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전가격 사전합의 절차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경우는 세무기관에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세무기관이 기업의 사실 은폐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기업에게 <세무사항 통보서>를 송달하여 그 원인을 설명하여야 한다. 기업이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집행을 거절하거나 기업에게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저촉되는 기타 상황이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상황을 봐서 처리하되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종료할 수도 있다.  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신청을 우선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1) 기업의 특수관계자간 업무 왕래 신고자료와 동기자료가 완비되었고 합리적이며 공시가 충분히 이뤄진 경우;  (2) 기업의 납세신용 등급이 A등급인 경우;  (3) 세무기관이 기업에 대하여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하였고 해당 사건이 이미 종결된 경우;  (4) 체결된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집행기간 만료로 기업이 갱신을 신청하였고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기재된 사실과 경영환경에 실질적 변화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5)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완비되었고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에 대한 분석이 온전하고 명확하며 원가 절감, 마켓 프리미엄 등 지역적 특수 요인이 충분히 고려되었고 채택하고자 하는 가격 결정원칙 및 계산방법이 합리적인 경우;  (6) 세무기관이 전개하는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업무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7)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였으며 연관된 조세협정 체약 당사국 세무당국의 협상•체결 의욕이 비교적 강하고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대한 중시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  (8)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유리한 기타 요인.  17.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동시에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의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세무기관과 연관되었거나 동시에 국가세무국 또는 지방세무국과 연관된 경우 국가세무총국이 통일적으로 조직 및 조율한다.  기업이 상기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 및 기타 지정 세무기관에 동시에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관련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통일적으로 기업과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또는 지정 세무기관이 통일적으로 기업과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체결하거나 각 관할 세무기관이 기업과 각각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18.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한개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의 관할 세무기관과 연관되었고 국가세무국 또는 지방세무국 둘 중 하나와 연관된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해당 세무기관이 통일적으로 조직 및 조율한다.  19. 세무기관이 기업과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협상•체결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전가격 사전합의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세무기관과 기업이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경우 세무기관은 협상 과정에서 취득한 기업과 관련된 제의, 추리, 관념 및 판단 등 비(非) 실질적 정보를 해당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특수관계자 거래의 특별세무조사 및 특별납세조정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 국가안전과 연관된 정보를 제외하고 국가세무총국은 외국 정부와 체결한 국제공약, 협정, 협의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국가(지역)의 세무당국과 2016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기업은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 체결 시 최종지배회사, 직상급 직접지배회사 및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해외 특수관계자 소재국(지역) 명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21. 이 공고에서 관할 세무기관이라 함은 특별납세조정 사항을 책임지는 세무기관을 지칭한다.  22. 이 공고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납세조정 실시방법(시범시행)>(국세발[2009]2호 문건으로 인쇄발부) 제6장은 동시에 폐지된다. 이 공고 시행 전에 세무기관에 의해 정식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이 공고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1. [이전가격 사전합의 예비회담 신청서](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173)  2.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서](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174)  3. [이전가격 사전합의 정식 신청서](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175)  4.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문 (참조 문서)](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176)  5. [이전가격 사전합의 세금 추징(환급) 통보서](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177)  6. [이전가격 사전합의 갱신 신청서](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178)  국가세무총국  2016년 10월 11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完善预约定价安排管理有关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64号  　　为进一步完善预约定价安排管理，执行我国政府对外签署的避免双重征税协定、协议或者安排（以下简称“税收协定”），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以下简称“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以下简称“税收征管法”）及其实施细则的有关规定，现就有关事项公告如下：  　　一、企业可以与税务机关就其未来年度关联交易的定价原则和计算方法达成预约定价安排。  　　二、预约定价安排的谈签与执行经过预备会谈、谈签意向、分析评估、正式申请、协商签署和监控执行6个阶段。预约定价安排包括单边、双边和多边3种类型。  三、预约定价安排适用于主管税务机关向企业送达接收其谈签意向的《税务事项通知书》之日所属纳税年度起3至5个年度的关联交易。  企业以前年度的关联交易与预约定价安排适用年度相同或者类似的，经企业申请，税务机关可以将预约定价安排确定的定价原则和计算方法追溯适用于以前年度该关联交易的评估和调整。追溯期最长为10年。  　　预约定价安排的谈签不影响税务机关对企业不适用预约定价安排的年度及关联交易的特别纳税调查调整和监控管理。  四、预约定价安排一般适用于主管税务机关向企业送达接收其谈签意向的《税务事项通知书》之日所属纳税年度前3个年度每年度发生的关联交易金额4000万元人民币以上的企业。  五、企业有谈签预约定价安排意向的，应当向税务机关书面提出预备会谈申请。税务机关可以与企业开展预备会谈。  　　（一）企业申请单边预约定价安排的，应当向主管税务机关书面提出预备会谈申请，提交《预约定价安排预备会谈申请书》（附件1）。主管税务机关组织与企业开展预备会谈。  　　企业申请双边或者多边预约定价安排的，应当同时向国家税务总局和主管税务机关书面提出预备会谈申请，提交《预约定价安排预备会谈申请书》。国家税务总局统一组织与企业开展预备会谈。  　　（二）预备会谈期间，企业应当就以下内容作出简要说明：  　　1.预约定价安排的适用年度；  　　2.预约定价安排涉及的关联方及关联交易；  　　3.企业及其所属企业集团的组织结构和管理架构；  　　4.企业最近3至5个年度生产经营情况、同期资料等；  　　5.预约定价安排涉及各关联方功能和风险的说明，包括功能和风险划分所依据的机构、人员、费用、资产等；  　　6.市场情况的说明，包括行业发展趋势和竞争环境等；  　　7.是否存在成本节约、市场溢价等地域特殊优势；  　　8.预约定价安排是否追溯适用以前年度；  　　9.其他需要说明的情况。  　　企业申请双边或者多边预约定价安排的，说明内容还应当包括：  　　1.向税收协定缔约对方税务主管当局提出预约定价安排申请的情况；  　　2.预约定价安排涉及的关联方最近3至5个年度生产经营情况及关联交易情况；  　　3.是否涉及国际重复征税及其说明。  （三）预备会谈期间，企业应当按照税务机关的要求补充资料。  六、税务机关和企业在预备会谈期间达成一致意见的，主管税务机关向企业送达同意其提交谈签意向的《税务事项通知书》。企业收到《税务事项通知书》后向税务机关提出谈签意向。  　　（一）企业申请单边预约定价安排的，应当向主管税务机关提交《预约定价安排谈签意向书》（附件2），并附送单边预约定价安排申请草案。  　　企业申请双边或者多边预约定价安排的，应当同时向国家税务总局和主管税务机关提交《预约定价安排谈签意向书》，并附送双边或者多边预约定价安排申请草案。  　　（二）单边预约定价安排申请草案应当包括以下内容：  　　1.预约定价安排的适用年度；  　　2.预约定价安排涉及的关联方及关联交易；  　　3.企业及其所属企业集团的组织结构和管理架构；  　　4.企业最近3至5个年度生产经营情况、财务会计报告、审计报告、同期资料等；  　　5.预约定价安排涉及各关联方功能和风险的说明，包括功能和风险划分所依据的机构、人员、费用、资产等；  　　6.预约定价安排使用的定价原则和计算方法，以及支持这一定价原则和计算方法的功能风险分析、可比性分析和假设条件等；  　　7.价值链或者供应链分析，以及对成本节约、市场溢价等地域特殊优势的考虑；  　　8.市场情况的说明，包括行业发展趋势和竞争环境等；  　　9.预约定价安排适用期间的年度经营规模、经营效益预测以及经营规划等；  　　10.预约定价安排是否追溯适用以前年度；  　　11.对预约定价安排有影响的境内、外行业相关法律、法规；  　　12.企业关于不存在本条第（三）项所列举情形的说明；  　　13.其他需要说明的情况。  　　双边或者多边预约定价安排申请草案还应当包括：  　　1.向税收协定缔约对方税务主管当局提出预约定价安排申请的情况；  　　2.预约定价安排涉及的关联方最近3至5个年度生产经营情况及关联交易情况；  　　3.是否涉及国际重复征税及其说明。  （三）有下列情形之一的，税务机关可以拒绝企业提交谈签意向：  　　1.税务机关已经对企业实施特别纳税调整立案调查或者其他涉税案件调查，且尚未结案的；  　　2.未按照有关规定填报年度关联业务往来报告表；  　　3.未按照有关规定准备、保存和提供同期资料；  　　4.预备会谈阶段税务机关和企业无法达成一致意见。  七、企业提交谈签意向后，税务机关应当分析预约定价安排申请草案内容，评估其是否符合独立交易原则。根据分析评估的具体情况可以要求企业补充提供有关资料。  　　税务机关可以从以下方面进行分析评估：  　　（一）功能和风险状况。分析评估企业与其关联方之间在供货、生产、运输、销售等各环节以及在研究、开发无形资产等方面各自作出的贡献、执行的功能以及在存货、信贷、外汇、市场等方面承担的风险。  　　（二）可比交易信息。分析评估企业提供的可比交易信息，对存在的实质性差异进行调整。  　　（三）关联交易数据。分析评估预约定价安排涉及的关联交易的收入、成本、费用和利润是否单独核算或者按照合理比例划分。  （四）定价原则和计算方法。分析评估企业在预约定价安排中采用的定价原则和计算方法。如申请追溯适用以前年度的，应当作出说明。  　　（五）价值链分析和贡献分析。评估企业对价值链或者供应链的分析是否完整、清晰，是否充分考虑成本节约、市场溢价等地域特殊优势，是否充分考虑本地企业对价值创造的贡献等。  　　（六）交易价格或者利润水平。根据上述分析评估结果，确定符合独立交易原则的价格或者利润水平。  　　（七）假设条件。分析评估影响行业利润水平和企业生产经营的因素及程度，合理确定预约定价安排适用的假设条件。  　　八、分析评估阶段，税务机关可以与企业就预约定价安排申请草案进行讨论。税务机关可以进行功能和风险实地访谈。税务机关认为预约定价安排申请草案不符合独立交易原则的，企业应当与税务机关协商，并进行调整；税务机关认为预约定价安排申请草案符合独立交易原则的，主管税务机关向企业送达同意其提交正式申请的《税务事项通知书》，企业收到通知后，可以向税务机关提交《预约定价安排正式申请书》（附件3），并附送预约定价安排正式申请报告。  　　（一）企业申请单边预约定价安排的，应当向主管税务机关提交上述资料。企业申请双边或者多边预约定价安排的，应当同时向国家税务总局和主管税务机关提交上述资料，并按照有关规定提交启动特别纳税调整相互协商程序的申请。  　　（二）有下列情形之一的，税务机关可以拒绝企业提交正式申请：  　　1.预约定价安排申请草案拟采用的定价原则和计算方法不合理，且企业拒绝协商调整；  2.企业拒不提供有关资料或者提供的资料不符合税务机关要求，且不按时补正或者更正；  　　3.企业拒不配合税务机关进行功能和风险实地访谈；  　　4.其他不适合谈签预约定价安排的情况。  　　九、税务机关应当在分析评估的基础上形成协商方案，并据此开展协商工作。  　　（一）主管税务机关与企业开展单边预约定价安排协商，协商达成一致的，拟定单边预约定价安排文本（参照文本见附件4）。  　　国家税务总局与税收协定缔约对方税务主管当局开展双边或者多边预约定价安排协商，协商达成一致的，拟定双边或者多边预约定价安排文本。  　　（二）预约定价安排文本可以包括以下内容：  　　1.企业及其关联方名称、地址等基本信息；  　　2.预约定价安排涉及的关联交易及适用年度；  　　3.预约定价安排选用的定价原则和计算方法，以及可比价格或者可比利润水平等；  　　4.与转让定价方法运用和计算基础相关的术语定义；  　　5.假设条件及假设条件变动通知义务；  　　6.企业年度报告义务；  　　7.预约定价安排的效力；  　　8.预约定价安排的续签；  　　9.预约定价安排的生效、修订和终止；  　　10.争议的解决；  　　11.文件资料等信息的保密义务；  　　12.单边预约定价安排的信息交换；  　　13.附则。  　　（三）主管税务机关与企业就单边预约定价安排文本达成一致后，双方的法定代表人或者法定代表人授权的代表签署单边预约定价安排。  　　国家税务总局与税收协定缔约对方税务主管当局就双边或者多边预约定价安排文本达成一致后，双方或者多方税务主管当局授权的代表签署双边或者多边预约定价安排。国家税务总局应当将预约定价安排转发主管税务机关。主管税务机关应当向企业送达《税务事项通知书》，附送预约定价安排，并做好执行工作。  　　（四）预约定价安排涉及适用年度或者追溯年度补（退）税款的，税务机关应当按照纳税年度计算应补征或者退还的税款，并向企业送达《预约定价安排补（退）税款通知书》（附件5）。  　　十、税务机关应当监控预约定价安排的执行情况。  　　（一）预约定价安排执行期间，企业应当完整保存与预约定价安排有关的文件和资料，包括账簿和有关记录等，不得丢失、销毁和转移。  　　企业应当在纳税年度终了后6个月内，向主管税务机关报送执行预约定价安排情况的纸质版和电子版年度报告，主管税务机关将电子版年度报告报送国家税务总局；涉及双边或者多边预约定价安排的，企业应当向主管税务机关报送执行预约定价安排情况的纸质版和电子版年度报告，同时将电子版年度报告报送国家税务总局。  　　年度报告应当说明报告期内企业经营情况以及执行预约定价安排的情况。需要修订、终止预约定价安排，或者有未决问题或者预计将要发生问题的，应当作出说明。  　　（二）预约定价安排执行期间，主管税务机关应当每年监控企业执行预约定价安排的情况。监控内容主要包括：企业是否遵守预约定价安排条款及要求；年度报告是否反映企业的实际经营情况；预约定价安排所描述的假设条件是否仍然有效等。  　　（三）预约定价安排执行期间，企业发生影响预约定价安排的实质性变化，应当在发生变化之日起30日内书面报告主管税务机关，详细说明该变化对执行预约定价安排的影响，并附送相关资料。由于非主观原因而无法按期报告的，可以延期报告，但延长期限不得超过30日。  　　税务机关应当在收到企业书面报告后，分析企业实质性变化情况，根据实质性变化对预约定价安排的影响程度，修订或者终止预约定价安排。签署的预约定价安排终止执行的，税务机关可以和企业按照本公告规定的程序和要求，重新谈签预约定价安排。  　　（四）国家税务局和地方税务局与企业共同签署的预约定价安排，在执行期间，企业应当分别向国家税务局和地方税务局报送年度报告和实质性变化报告。国家税务局和地方税务局应当对企业执行预约定价安排的情况，实施联合监控。  　　十一、预约定价安排执行期满后自动失效。企业申请续签的，应当在预约定价安排执行期满之日前90日内向税务机关提出续签申请，报送《预约定价安排续签申请书》（附件6），并提供执行现行预约定价安排情况的报告，现行预约定价安排所述事实和经营环境是否发生实质性变化的说明材料以及续签预约定价安排年度的预测情况等相关资料。  　　十二、预约定价安排采用四分位法确定价格或者利润水平，在预约定价安排执行期间，如果企业当年实际经营结果在四分位区间之外，税务机关可以将实际经营结果调整到四分位区间中位值。预约定价安排执行期满，企业各年度经营结果的加权平均值低于区间中位值，且未调整至中位值的，税务机关不再受理续签申请。  　　双边或者多边预约定价安排执行期间存在上述问题的，主管税务机关应当及时将有关情况层报国家税务总局。  　　十三、预约定价安排执行期间，主管税务机关与企业发生分歧的，双方应当进行协商。协商不能解决的，可以报上一级税务机关协调；涉及双边或者多边预约定价安排的，必须层报国家税务总局协调。对上一级税务机关或者国家税务总局的决定，下一级税务机关应当予以执行。企业仍不能接受的，可以终止预约定价安排的执行。  十四、在预约定价安排签署前，税务机关和企业均可暂停、终止预约定价安排程序。税务机关发现企业或者其关联方故意不提供与谈签预约定价安排有关的必要资料，或者提供虚假、不完整资料，或者存在其他不配合的情形，使预约定价安排难以达成一致的，可以暂停、终止预约定价安排程序。涉及双边或者多边预约定价安排的，经税收协定缔约各方税务主管当局协商，可以暂停、终止预约定价安排程序。税务机关暂停、终止预约定价安排程序的，应当向企业送达《税务事项通知书》，并说明原因；企业暂停、终止预约定价安排程序的，应当向税务机关提交书面说明。  十五、没有按照规定的权限和程序签署预约定价安排，或者税务机关发现企业隐瞒事实的，应当认定预约定价安排自始无效，并向企业送达《税务事项通知书》，说明原因；发现企业拒不执行预约定价安排或者存在违反预约定价安排的其他情况，可以视情况进行处理，直至终止预约定价安排。  十六、有下列情形之一的，税务机关可以优先受理企业提交的申请：  　　（一）企业关联申报和同期资料完备合理，披露充分；  　　（二）企业纳税信用级别为A级；  　　（三）税务机关曾经对企业实施特别纳税调查调整，并已经结案；  　　（四）签署的预约定价安排执行期满，企业申请续签，且预约定价安排所述事实和经营环境没有发生实质性变化；  　　（五）企业提交的申请材料齐备，对价值链或者供应链的分析完整、清晰，充分考虑成本节约、市场溢价等地域特殊因素，拟采用的定价原则和计算方法合理；  　　（六）企业积极配合税务机关开展预约定价安排谈签工作；  　　（七）申请双边或者多边预约定价安排的，所涉及的税收协定缔约对方税务主管当局有较强的谈签意愿，对预约定价安排的重视程度较高；  　　（八）其他有利于预约定价安排谈签的因素。  　　十七、预约定价安排同时涉及两个或者两个以上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税务机关的，或者同时涉及国家税务局和地方税务局的，由国家税务总局统一组织协调。  　　企业申请上述单边预约定价安排的，应当同时向国家税务总局及其指定的税务机关提出谈签预约定价安排的相关申请。国家税务总局可以与企业统一签署单边预约定价安排，或者指定税务机关与企业统一签署单边预约定价安排，也可以由各主管税务机关与企业分别签署单边预约定价安排。  　　十八、单边预约定价安排涉及一个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内两个或者两个以上主管税务机关，且仅涉及国家税务局或者地方税务局的，由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相应税务机关统一组织协调。  　　十九、税务机关与企业在预约定价安排谈签过程中取得的所有信息资料，双方均负有保密义务。除依法应当向有关部门提供信息的情况外，未经纳税人同意，税务机关不得以任何方式泄露预约定价安排相关信息。  　　税务机关与企业不能达成预约定价安排的，税务机关在协商过程中所取得的有关企业的提议、推理、观念和判断等非事实性信息，不得用于对该预约定价安排涉及关联交易的特别纳税调查调整。  　　二十、除涉及国家安全的信息以外，国家税务总局可以按照对外缔结的国际公约、协定、协议等有关规定，与其他国家（地区）税务主管当局就2016年4月1日以后签署的单边预约定价安排文本实施信息交换。企业应当在签署单边预约定价安排时提供其最终控股公司、上一级直接控股公司及单边预约定价安排涉及的境外关联方所在国家（地区）的名单。  　　二十一、本公告所称主管税务机关是指负责特别纳税调整事项的税务机关。  　　二十二、本公告自2016年12月1日起施行。《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试行）》（国税发〔2009〕2号文件印发）第六章同时废止。本公告施行前税务机关未接受正式申请的预约定价安排，适用本公告的规定。  　　特此公告。  附件：  1. [预约定价安排预备会谈申请书](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173)  2. [预约定价安排谈签意向书](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174)  3. [预约定价安排正式申请书](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175)  4. [单边预约定价安排（参照文本）](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176)  5. [预约定价安排补（退）税款通知书](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177)  6. [预约定价安排续签申请书](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178)  国家税务总局  2016年10月11日 |